

시·군체육회 운영지원 규정

제정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호에 따른 시·군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 운영비”란 시·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상북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사무국장 활동비”란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체육행사, 시책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사무국장에 한하여 지원하며, 국제 및 전국대회, 도 단위 체육행사 등 관련 업무추진 시에만 지원한다.
3. “사무국장”이란 시·군체육회장의 임명을 받은 자를 말하며, 직무대행자는 사무국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3조(집행) 제2조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및 사무국장 활동비는 시·군체육회와 관련된 업무추진 및 직무활동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의 제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는 해당 시·군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

제5조(세부기준 등) 시·군체육회 운영비 및 사무국장 활동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체육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5.04.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